#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②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이 산업자원부령 제183호('02.9.28)로 개정·공포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제도연구실 –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제45조제1항관련)(신 설) ✍종전 규칙 별표 14

| 구 분 | 구비요건 | |
|---|---|---|
| 1. 자본금 | 2억원이상 | |
| 2. 기술인력 | ㅇ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5명 이상<br>ㅇ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10명이상<br>ㅇ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명 이상 | |
| 3. 장비 | 공용장비 | ㅇ 계전기시험기 : 2대<br>ㅇ 절연내력시험기(직류60kV 또는 교류30kV) : 1대<br>ㅇ 절연유내압시험기 : 2대<br>ㅇ 절연유산가측정기 : 2대<br>ㅇ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Ω) : 3대<br>ㅇ 회로시험기 : 3대<br>ㅇ 특고압 COS 조작봉 : 3대<br>ㅇ 고압절연장갑 : 5족<br>ㅇ 절연장화 : 5족<br>ㅇ 절연안전모 : 5개 |
| | 개인장비 |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MΩ), 클램프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을 제외한다) 1명당 각 1대 |
| 비 고 : 1.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br>2. 위 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 |

**[별표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2항관련)

| 구 분 | | 특별시 및 광역시 | 도 |
|---|---|---|---|
|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금액) | | 2천5백만원 | 1천2백만원 |
| 2. 기술인력 | ㅇ 기사(명) | 7 | 5 |
| | - 전기기사 | 2 | 2 |
| | - 전기산업기사 | 5 | 3 |
| | ㅇ 안전관리보조원(명) | | 1 |
| 3. 장비(종) | | 10 | 10 |
| ㅇ 개인장비 | | | |
| -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MΩ) | | 7 | 5 |
| - 접지저항측정기 | | 7 | 5 |
| - 클램프메타 | | 7 | 5 |
| - 저압검전기 | | 7 | 5 |
| - 고압 및 특고압 검전기 | | 7 | 5 |
| ㅇ 공용장비 | | | |
| -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Ω) | | 1 | 1 |
| - 계전기시험기 | | 1 | 1 |
| - 절연유내압시험기 | | 1 | 1 |
| - 절연유산가측정기 | | 1 | 1 |
| - 특고압 COS조작봉 | | 1 | 1 |

비 고 : 1. 전기기사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거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을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실과 영업소 출 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장소마다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3]**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제45조제3항관련)

| 장 비 | 수 량 |
|---|---|
| ㅇ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MΩ) | 1 |
| ㅇ 접지저항측정기 | 1 |
| ㅇ 클램프메타 | 1 |
| ㅇ 저압검전기 | 1 |
| ㅇ 고압 및 특고압 검전기 | 1 |
| ㅇ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Ω) | 1 |
| ㅇ 계전기시험기 | 1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63조제3항관련)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108조 제1항제1호 | 200만원 |
| 2.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법 제108조 제1항제1호의2 | 200만원 |
| 3.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한 명령에 사용한 자 | 법 제108조 제1항제1호의3 | 200만원 |
|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108조 제1항제2호 | 200만원 |
| 5.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법 제108조 제1항제3호 | 200만원 |
| 6.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6조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허위의 변경신고를 한 자 | 법 제108조 제2항제1호 | 80만원 |
| 7.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약관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08조 제2항제2호 | 50만원 |
| 8. 법 제18조제2항 또는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08조 제2항제3호 | 50만원 |
| 9. 법 제61조제2항 또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 법 제108조 제2항제4호 | 80만원 |
| 10.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주거용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108조 제2항제6호 | 80만원 |
| 11. 법 제73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08조 제2항제7호 | 50만원 |
| 12.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08조 제2항제8호 | 30만원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5]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제28조제1항관련)

| 공사의 종류 | 인가를 요하는 것 | 신고를 요하는 것 |
|---|---|---|
| 1. 발전소 | | |
| 가. 설치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의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 |
| 나. 변경공사 | | |
| (1)발전설비의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의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의 설치 |
| (2)발전설비의 변경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
| (가) 원동력설비 | | |
| ① 수력설비 | ㉮ 댐 | 댐의 설치 | (1)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댐의 설치<br>(2)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취수설비 | 취수설비의 설치 | (1)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취수설비의 설치<br>(2)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한 것 |
| | ㉰ 침사지 |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
| | ㉱ 도수로 또는 방수로 |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
| | ㉲ 헤드탱크 또는 서어지탱크 | 헤드탱크 또는 서어지탱크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서어지탱크의 설치<br>(2)개조하는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br>(가) 여수로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br>(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br>(다) 서어지탱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br>(라) 서어지탱크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수압관로 |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 (1)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br>(2)개조하는것으로서 관본체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수 차 | 수차의 설치 | (1)출력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의 설치<br>(2) 대체 및 개조 |
| | ㉵ 양수식발전소의 양수용펌프 | 펌프의 설치 | (1)출력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의 설치<br>(2) 대체 및 개조 |
| | ㉶ 저수지 또는 조정지 |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 (1)출력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br>(2)개조하는것으로서 상시만수위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② 기력설비 | | | |

| 공사의 종류 | 인가를 요하는 것 | 신고를 요하는 것 |
|---|---|---|
| ㉮증기터어빈 또는 왕복기관 | (1)증기터어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 (1)출력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어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
| | (2)증기터어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 (2)출력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어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3)증기터어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4)대 체 |
| ㉯보일러 | (1)보일러의 설치 | (1)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의 설치 |
| | (2)보일러를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2)출력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재열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재열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 | | (3)보일러를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4)대 체 |
| | | (5)수리하는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
| | |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 |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연료연소설비 | (1)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1)출력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 | (2)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변경을 수반하는 것 | (2)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변경을 수반하는 것 |

| 공사의 종류 | 인가를 요하는 것 | 신고를 요하는 것 |
|---|---|---|
| | | 하는 것 |
| ㉱공해방지설비 |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지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지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
| ㉲증기밸브 |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 ㉳보조설비 |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③가스터빈설비 | | |
| ㉮가스터빈 |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 (1)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
| | | (2)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1)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 | (2)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
| ㉰연료연소설비 |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1)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 | | (2)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보조설비 |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 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④복합화력설비 | | |
| ㉮가스터빈 |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 (1)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
| | | (2)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1)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 | (2)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
| ㉰연료연소설비 |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1)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 | | (2)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보일러 | (1)보일러의 설치 | (1)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 |

| 공사의 종류 | 인가를 요하는 것 | 신고를 요하는 것 |
|---|---|---|
| | | 의 발전소의 보일러의 설치 |
| |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가)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가)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나) 재열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 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나) 재열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 | |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4) 대 체 |
| | |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
| | |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 |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 공해방지설비 |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지 처리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지 처리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
| ㉯ 증기밸브 |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 ㉰ 증기터빈 |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
| |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4) 대체 |

| 공사의 종류 | 인가를 요하는 것 | 신고를 요하는 것 |
|---|---|---|
| ㉱ 보조설비 |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⑤ 내연력설비 ㉮ 내연기관 |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⑥ 풍력설비 | 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
| ⑦원자력설비 |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원자력발전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증기터빈설비 |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
| |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 | (3) 습분분리재열기의 설치 또는 대체 | (3) 습분분리재열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⑭ 급수설비 |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체 |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체 |
| ⑮ 복수설비 | 복수기의 설치 또는 대체 | 복수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⑯ 보조설비 |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 (2)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2)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나) 발전기계통설비 | | |
| ① 발전기 |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의 설치 또는 대체 |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② 변압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 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③ 차단기 |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공사의 종류 | 인가를 요하는 것 | 신고를 요하는 것 |
|---|---|---|
| 2. 변전소 | | |
| 가. 설치공사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설치 |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의 설치 |
| 나. 변경공사 | | |
| (1) 변압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2) 차단기 |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3. 송전선로 | | |
| 가. 설치공사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 |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br>(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지중송전선로 |

| 공사의 종류 | 인가를 요하는 것 | 신고를 요하는 것 |
|---|---|---|
| | | 외 설치 |
| 나. 변경공사 | | |
| (1) 전선로 |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
| (2) 개폐소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폐소의 설치 또는 개조 |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폐소의 설치 또는 개조 |
| 4. 배전선로(공동구 또는 전력구에 한한다) | | |
| 가. 설치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 |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의 설치 |
| 나. 변경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 |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


# 전기 기술사 기사 기능사 철도강좌

● 노동부 ● 교육부 ● 서울시 지정교육기관

*"전기에 관한 한 최고의 명문임을 자부합니다"*

*1964년 국내최초로 설립한 이래— 38년간 150,000여명의 전기기술자를 배출한 최고의 명문!!*

## 기술사과정

※ 기술사/기사 기출문제 : 홈페이지 참조

| 강의과정 | 반 별 | 강의시간 |
|---|---|---|
| 발송배전 기 술 사 | 수요정규반 | 수요일 19:00~22:00 |
| | 일요정규반 | 일요일 10:00~15:00 |
| | 심층연구반 | 토요일 16:30~19:30 |
| 건축전기 기 술 사 | 수요정규반 | 수요일 19:00~22:00 |
| | 일요정규반 | 일요일 10:00~15:00 |
| | 심층연구반 | 토요일 16:30~19:30 |
| 전기철도 기 술 사 | 일요정규반 | 일요일 10:00~15:00 |
| | 심층연구반 | 토요일 16:30~19:30 |

■교수진 : 분야별, 과목별 최고의 권위교수진

- 유상봉 : 공학박사/국내최다 5종목 기술사보유/ Y대교수
- 김세동 : 공학박사/ 기술사/ D대교수
- 조양행 : 공학박사/ Y대교수
- 임철교 : 기술사/ 경영지도사/ N회사 부장/D대겸임교수
- 이윤상 : 기술사/ M대겸임교수/(주)Y종합설계감리 대표
- 김영곤 : 기술사(전기철도 외 2종목)/D엔지니어링 부사장
- 박병수 : 기술사(전기철도 외 1종목)/D회사 이사 外4인

## 기사과정

■ 강의과정
- 전기(산업)기사반
- 전기공사(산업)기사반
- 전기철도(산업)기사반
- 소방설비(산업)기사반
- 전기기능사반
- 각 과정별 필기/실기특강반

■ 개 강
- 정규반: 매월10일
- 특강반: 공단원서접수 첫날

■ 강의시간
- 오전반 10:00~12:30
- 오후반 16:00~18:30
- 야간반 19:00~21:30

## 특별과정

■수강료환급반
- 대상: 고용보험 적용업체에 재직중인 자(고용보험 남부자)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에 의거 노동부에서 수료자 전원에게 수강료를 80~90%환급

■서신강좌과정
- 대상: 시간상,거리상 강의를 직접수강 할수 없는 직장인 이나 지방거주자를 위한 과정
- 실시종목:전기분야 기사/산업기사 필기과정 및 실기과정

■국비무료교육
- 대상:전기공사기사,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실업자로서 취업희망자
- 특전: - 전원 취업알선
  - 매월 훈련수당 25만원 지급
  - 수강료, 교재비 일체무료
  - 노동부인정 수료증발급

# 서울공과전기학원

www.sgh.co.kr

676-1113~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55번지(지하철2,5호선 영등포구청 역 하차, 문래역방면 60m)